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및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제19조의7 신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되 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 및 업무수행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수금의 금액(제30조제3항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환수금을 3천원 미만으로 함.

다.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범위(제44조제2호, 제44조제3호 신설)

현재 공인노무사가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려면 그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있으면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세무사도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자격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관련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의 축소(제51조제1항)

1) 현재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 명부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바,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일부 중복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통합·축소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서류 중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 명부와 징수업무 처리장부를 통합하고,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 관계 서류 및 수령 관계 서류와 보험료 등의 납입통지 관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5630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중 “임금 등”을 “임금등”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제4조제1호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제3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부정이득의 징수 등)”을“(부당이득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받은 사람”을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채당금 또는 용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를 “지급 또는 용자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했거나 지급받은”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채당금 또는 용자금이나 잘못 지급된”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반환 요구”를 “환수”로,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반환절차”를 “환수절차”로 한다.

제20조의6 중 “법 제14조에 따른 채당금 반환요구의 통지”를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반환요구”를 “부당이득의 환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차목 중 “통지”를 “통지 및 독촉”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파.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하.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5조 중 “법 제14조에 따른 반환금”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호 중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를 “부당이득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개정이유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체당금 지급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528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당금 지급 사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의 추가(제5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 1)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속히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 3)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제24조제2항제5호타목·파목 및 하목 신설)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 이기권

●**대통령령 제2563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500	500	500
--	----------------	-----	-----	-----

**부 칙**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2527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위반 시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